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639,800,000	19,194,000
일반회계		599,100,000	17,973,000
특별회계		40,700,000	1,221,000
	기타특별회계	40,700,000	1,221,000
	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789,000	23,670
	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	7,160,000	214,800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48,000	1,440
	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	1,463,000	43,890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0	0
	치수사업특별회계	360,000	10,800
	상수도사업특별회계	5,880,000	176,400
	하수도사업특별회계	25,000,000	750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306,38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9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